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경영체법」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 제6조제1항 중 “매년 2시간 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2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 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농업경영체법」 제27조의3에
	<u>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u>
3. ~ 5. (생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u>매년 2시간 이상</u> 실시한다.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